

제 삼자 입장에서 적정한 보험금산출



김 응 렐
〔주〕극동검정회장

손해보험은 우연한 사고로 인한 경제적 가치의 손실내지는 감소를 보상하는 데 있다. 즉 보험사고가 발생되고 보험금이 지급된다는 간단한 원칙이 적용될 수 있으나 실제 보험금이 피보험자에게 지급되기까지는 그 과정이 명확하고 간단한 수학 공식 같이 정립되어 있지 않고 또 보험자와 피보험자간의 이해관계가 얹혀 있어 많은 경우 분쟁의 소지가 있음을 경험을 통하여 알고 있는 바이다.

보험금 지급에 있어 이해 당사자간의 분쟁의 소지를 극소화하고 한결음 더 나아가서는 분쟁을 없애기 위하여 보험의 목적에 발생된 손해정도를 확인, 조사하여 손해액을 결정

하고 보험자로 하여금 피보험자에게 공정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그 기준이 되는 자료를 제시하는 과정에 따른 제 업무와 부보할 보험의 목적에 대한 가액산정, 그리고 위험도의 측정검토와 위험개선의 권고를 하는 등의 업무를 검정업무라고 할 수 있겠다.

위에서 개술한 바와 같이 검정업무의 영역은 그 범위가 넓으며 목적에 따라 그 종류 또한 다양하여 상세히 기술하기에는 제약이 따르기에 현재 시행하고 있는 업무 중 피보험자의 이해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보편적인 것만을 간단히 설명하고자 한다.

보험사고의 발생후 이재조사 보고서가 작성될 때 까지의 과정을 단계적으로 기술한다면 ①보험자로부터 조사 의뢰 접수 ②청약서 접수 및 청약내용 확인 ③이재현장 출장 조사 ④가액 및 손해액 평가 ⑤보고서 작성 후 의뢰자에 회보라는 과정을 거친다.

(1) 보험자로부터 조사의뢰 접수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로부터 손해발생의 통지를 접수한 보험회사는 즉시 자체처리 또는 검정회사에 의뢰할 것인가의 여부를 판단후 검정회사에 의뢰할 것을 결정하면 전화 또는 공문으로 검정회사에 이재조사를 요청하며 검정회사는 이때부터 검정업무에 착수하게 된다.

(2) 청약서 접수 및 청약내용 확인

검정회사는 실제 현장조사에 착수하기에 앞서 보험회사로부터 당해 보험사고에 대한 보험 청약서에 기재된 내용에 대하여 미리 검토하여야 하는 바 이는 보험계약자, 보험의 목적, 소재지, 소유자, 보험금액, 특약사항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당해 손해상황과 보험청약서의 내용을 비교 검토하는 것은 현장출장 입회시에 실시하는 것이나 미리 계약내용의 전모를 파악하여 예비지식을 얻어두는 것이 검정업무를 정화하게 행하기 위한 필수요건인 것이다.

또한 가지 미리 보험청약서의 면밀한 검토를 요하는 이유는 앞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검정업무란 보험의 목적이 종류에 따라 다양하다고 하였듯이 검정회사는 각분야에 전문지식을 가진 검정원으로 구성되어 있는 바 과연 당해 사고가 어느 분야에 속하며 어떤 전문 검정원을 현장조사에 파견하느냐를 결정하는 필수요건이 되기도 하기 때문이다. 간단한 예를 든다면 건물, 동산, 전기, 기계, 화공, 특수한 물건 등이 있다.

(3) 이재현장 출장 조사

상기 2 단계와 3 단계인 출장 조사는 거의 동시에 이루어진다고 하겠다. 검정업무는 신속 정확을 그 기본으로 삼고 있는 바 그 이유는 손해의 조사 확인에 정확을 기하여 손해 경감에 최선을 다하고 동시에 공정한 보험금을 가장 빠른 기간내에 지급하려고 하기 때문이다. 즉 당해 손해를 입은 보험의 목적은 성질에 따라서는 그 물품이 사고 후 방치하면 계속 손해정도가 높아지고 손해의 영향이 확대될 성질의 것도 많으므로 피보험자에게 피해품의 처리에 대하여 적절한 지시를 하여 손해의 확대로 인한 경제적인 손실을 줄이자는 의도이다.

또 이재현장의 입회조사가 지연되는 것은 사실상의 조사가 불가능하고 분쟁의 소지가 발생할 수도 있으며 부도덕한 피보험자는 증거인멸을 할 기회를 가질 수 있는 경우가 더러는 발생하기 때문이다.

그리므로 보험회사로부터 의뢰를 받은 검정회사는 즉시 천재지변이 없는 한, 기후여건이 여하간 시골두데 산골까지 당해 손해를 입은 보험의 목적에 있는 곳에 해당 전문검정원을 파견한다. 현장조사에 임한 검정원은 2단계에서 검토한 청약서 내용과(또는 보험증권 기재사항) 실제 손해를 입은 보험의 목적과 대조 검토하고 보험금 지급에 관한 확인 및 조사를 한 후 보고서 작성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피해자로부터 제시받고 실제조사에 착수한다.

조사에 착수함에 있어 ① 사후증거로 사용하기 위하여 현장 사진촬영 ② 사고의 원인 및 내용 ③ 손해의 범위 ④ 관계 도면 작성 및 위치도면 작성의 순으로 보험가액 및 손해액 평가를 위한 기초조사를 진행하게 된다.

화재를 예로 든다면 발화일시, 화재의 원인, 발화장소, 화재시의 주위상황, 화재 현황, 목격자 및 관계자의 진술 등을 듣고 확인한다. 또 피해자에게 손해 명세서를 요청하며 피해자 또는 그 대리인 입회하에 하나 하나 품명 및 갯수를 확인 한다. 경우에 따라서는 정확한 분석을 위하여 피해품 및 소잔물 등의 샘플을 피해자의 승인하에 수거하기도 한다. 그 밖에 장부, 영수증, 구입판매 대장, 거래처 명단, 대차대조표, 재산 목록, 손익계산서, 영업 감찰, 임대차 계약서, 설계도면, 제조도면 등 가액 및 이재액 산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자료는 가능한한 모두 수집한다.

간혹 상기한 자료들을 검정원이 현장조사시 또는 현장조사 후 요청할 때 대부분의 피보험자들은 혹시나 하는 의구심에서 거부반응을 나타내는데 이번 기회를 통하여 검정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하고 싶은 말은 이 자료들은 오직

정확한 가액과 이재액 산정을 목적으로 참고로 할 뿐 여하한 타목적에 사용하지도, 또 사용할 수도 없으며 그 비밀은 보장받을 것이며 보고서 작성후에는 피해자에게 돌려드린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다.

검정원들이 요구하는 중요한 구비서류중 화재의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것으로서 관할 소방서장 또는 경찰서장이 발행하는 화재증명서가 있다.

(4) 가액 및 이재액 평가

세번째 단계인 현장조사후 수집한 자료들을 토대로 조사한 내용과 보험내용에 따라 보험의 목적별로 가액 및 손해액 산정을 하게된다.

건물 및 내부시설일 경우 현장에서 실측한 도면과 기존도면을 토대로 각 공사별 신축물량과 공사별 노임을 적산한 적후 사용기간에 따라 감가한다. 이때 사용하는 자료로서는 정부표준품셈표, 물가정보 및 물가자료, 보험가액 평가기준표, 세법, 시장조사등이 견적에 필요한 자료이며 또한 가옥대장 및 등기부등본 등이다.

기계류일 경우 조사된 내용에 따라 시장조사를 통해 삿가조사를 확인한 후 사용기간에 따라 감가한다. 수입기계 등 특수한 것들은 시장조사가 불가능한데 이때에는 수입면장, L/C 등 구입근거 서류를 참고로 하며 원산지 제조공장등에 직접연락하여 삿가를 확인하는 경우도 있다.

상품 또는 제조공장에 있는 가공품과 같은 원·부자재는 구입가 및 삿가, 반제품과 제품등은 그 상태까지의 원가를 산출하여 적용한다.

검정업무중 이 단계가 가장 까다롭고 상당한 시간을 요하며 정확을 기하여야 하는 과정으로서 이는 보험금 지급의 기준이 되며 보험자와 피보험자간의 이해관계가 가장 뚜렷이 표출되는 과정이기 때문이다. 까다로운 청약내용의 확인(또는 보험증권 기재사항 확인), 지루하고 고통 스러운 이재현장 조사를 하는 본질적인 목적은 가액 및 이재액 산정에 필요불가결한 과정이다.

(5) 보고서 작성

위에서 설명한 제단계에서 얻어진 자료에 의하여 보험자가 피보험자에게 지급할 보험금 산정을 위한 기본이 되는 검정보고서가 작성되며 이 보고서를 의뢰자에게 접수시킴으로서 검정업무는 종결된다.

보험의 목적에 따라 보고서 작성의 형식에 다소 차이는 두고 있으나 일반적으로 보고서에 포함되는 내용들을 간략

하게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① 표지-의뢰자, 피보험자의 성명, 상호 및 소재지, 현장조사 일자, 검정 보고서 번호, 작성일자.

② 총괄표-이 부분에는 구체적인 보험의 목적 표시, 보험금액, 보험기액, 이재액, 잔존물의 금액과 이재액에서 잔존물의 금액을 공제한 정미이재액을 표시.

③ 보험청약사항-보험의 종류, 보험증권번호, 소재지, 보험계약자, 보험기간, 보험의 목적과 수용사항 및 작업의 종류.

④ 일반사항 및 목적물의 개요-상호, 소유자, 이재가 발생하기 이전까지의 개략적인 설명 및 목적물의 개요.

⑤ 이재상황-이재일시, 진화일시(가능한한 정확한 시분 표시), 발화원인, 이재경위.

⑥ 조사-현장조사 당시의 이재상황과 그 상황에 따른 결정사실과 시장조사 결과들을 명시.

⑦ 보험기액 및 이재액-보험기액 및 이재액을 구분하여 건물일 경우 공사별, 동산, 집기비품, 기계일 경우 품명별로 공히 명칭, 규격, 수량, 단위, 단가, 금액을 표시하고 사용기간에 따른 감가율을 적용하여 보험기액 및 이재액을 확정하며 소잔물 가액 내역.

⑧ 보고서-끝맺음과 동시에 기타 제증빙서류(이재현장 사진, 실측도면, 사업자등록증명, 등기부등본, 가옥대장, 화재증명등 기타 필요로하는 제반 증빙서류)를 첨부.

끝으로 검정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2가지 측면의 애로점을 항상 느끼는 바 그 하나가 검정원이 조사하는 과정에 있으며 다른 한면은 손해를 입은 피보험자의 안타까운 사정이라고 할 수 있겠다.

좀 더 자세히 기술하자면 검정원이 조사하는 과정에서 피보험자의 보험에 대한 인식부족 내지는 홍보부족으로 고의적이건 아니든간에 비협조적인 자세로 인한 자료수집의 어려움, 보험계약상의 착오 또는 미숙으로 인한 보험청약서상의 기재내용과 실제와의 현격한 차이점, 제반 사정으로 인한 현장출장의 장기 지연과 이재건물의 봉괴위험속에서 조사를 하여야 하는 검정원의 신체상의 안전문제, 특히 화공약품등의 이재로 인한 약물중독이라 하겠다.

피보험자의 측면에서 볼때 보험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마땅히 보상 받아야 할 손해를 보상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예컨대 필요한 제증빙서류가 없어서 보상을 받지못하는 경우와 초과보험 내지는 미달보험으로 인한 적정한 보험금을 인수하지 못하는 경우를 볼때 검정원으로서의 안타까움은 이루말할 수 없다.

앞으로 이러한 어려움이 하루 속히 개선되고 시정됨으로써 원활한 검정업무의 수행과 신속한 보험금 지급을 봄으로써 검정원으로서의 긍지와 보람을 느꼈으면 하는 마음 간절하다.

◆◆◆

